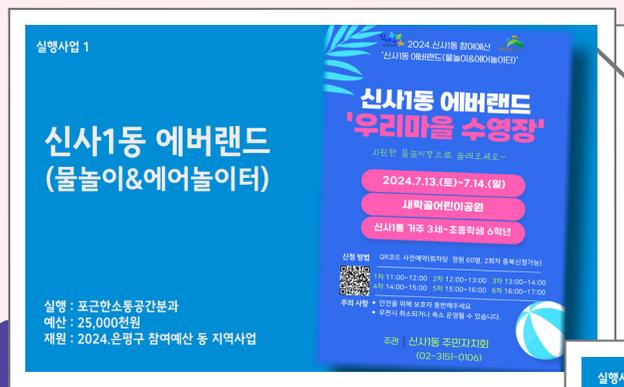


# 2024년 신사1동에서 실행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 은평구 참여예산 동지역사업 (예산 : 1억원)

## 1. 신사1동 에버랜드(물놀이&에어놀이터) 예산 24,000천원\_포근한소통공간분과



실행사업1

### 신사1동 에버랜드 (물놀이&에어놀이터)

| 1<br>필요성  | 2<br>사업내용   | 3<br>참여&효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사1동 놀이공간 부족</li> <li>-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li> <li>-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문화 형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놀이: 1회(7월, 2일간)</li> <li>-에어놀이터: 1회(9월)</li> <li>-장소: 새라골어린아공원</li> <li>-회당 5~6차시로 운영</li> <li>-차시당 50분운영,10분휴식</li> <li>-사전접수&amp;현장접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놀이: 약 1,267명</li> <li>-에어놀이터: 어린이 244명</li> <li>-가족단위 참여</li> <li>-근거리 놀이시설 향유</li> <li>-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에 기여</li> </ul> |

feat. 2023년 신사1동 에버랜드(물놀이) : 덕산중학교에서 진행, 1일차: 지역어린이&가족 / 2일차: 덕산중학교 전교생 참여



실행사업 1\_신사1동 에버랜드(물놀이)

### 행사사진



실행사업 1\_신사1동 에버랜드(에어놀이터)

### 행사사진



실행사업 1\_신사1동 에버랜드

#### 팁!

- 온라인 사전접수 우선,  
현장에서 대기자 접수
- 자원봉사자 1365 모집

#### 에피소드!

- 물놀이 사전접수 3시간 만에  
1,2차시 매진
- 신흥어린이공원에  
물놀이놀이터가 생겼어요

어린이·청소년 놀이 문화는 쭉욱 계속되어야 한다.  
2025년 드론배우기로...

## 2. 거리환경개선사업 예산 12,000천원\_그린생태마을분과

실행사업 2

### 2024. 거리환경개선사업

-기후학교  
-자투리공간! 내가만드는 골목정원

실행 : 그린생태마을분과  
예산 : 12,000천원  
재원 : 2024.은평구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주관 : 태양권비행비행니지협동조합  
주최 : 신사1동 중앙자치회  
전화 : 02-3151-0106-7

실행사업 2

### 거리환경개선사업 I \_기후학교 '푸른행성 녹색지구 행복신사'

|  |   |  |
|--|---|--|
| <p><b>1 필요성</b></p> <p>-신사1동 맞춤형 탄소중립활동이 필요<br/>-체계적이고 장기적 기후위기 대응 실천 방법이 필요</p> | <p><b>2 사업내용</b></p> <p>기후학교(총7강)<br/>-교육 및 실천 : 5회(2시간씩)<br/>-선진지 탐방 :<br/>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유니온타워/<br/>서대문구 영천 골목관리소<br/>-도전! 기후위기 골든벨 &amp; 수료식</p> | <p><b>3 참여&amp;효과</b></p> <p>-참여자 : 약 25여명<br/>-지역의 환경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기후학교 계획부터 참여<br/>-주민의 지역관심 증대<br/>-신사1동의 미래 비전 제시</p> |
|--|---|--|

feat. 수료식 날 태양권비행비행니지협동조합과 협약식을 진행했어요~

실행사업 2\_거리환경개선사업 I\_기후학교

#### 행사사진



실행사업 2\_거리환경개선사업 I\_기후학교

### 행사사진



실행사업 2\_거리환경개선사업 I\_기후학교

### 행사사진



실행사업 2\_거리환경개선사업 I\_기후학교

### 행사사진



실행사업 2

## 거리환경개선사업 II

### \_자투리공간! 내가 만드는 골목정원

1

#### 필요성

- 신사1동 골목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조성
- 꽃길 가꾸기로 거리환경 개선

2

#### 사업내용

- 모집 공고, 접수 장소 모니터링
- 화초와 꽃나무, 씨앗 배부
- 참여자가 식재 및 자라는 과정
- 신사1동소통방 밴드에 공유
- 골목정원 팸탈 제작

3

#### 참여&효과

- 참여자 : 14팀
- 주민, 어린이집, 복지관 등 개인과 기관이 다양하게 참여
- 주민이 직접 키움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쓰레기 투기 방지

feat. 유난히 무더운 여름에도 내가 만드는 골목정원의 꽃들은 건재했어요~

실행사업 2\_거리환경개선사업 II\_자투리공간!내가만드는 골목정원

### 행사사진



실행사업 2\_거리환경개선사업 II\_자투리공간!내가만드는 골목정원

### 행사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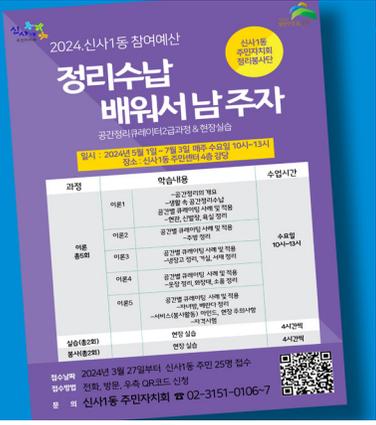


### 3. 정리수납 배워서 남주자 예산 5,000천원\_활기찬건강복지분과

**실행사업 3**

## 정리수납 배워서 남주자

실행 : 활기찬건강복지분과  
 예산 : 5,000천원  
 재원 : 2024.은평구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 과정              | 학습내용  | 수업시간           |
|-----------------|---|----------------|
| 이론1             | -공간의 정리 필요<br>-생활속 공간정리수납<br>-공간정리수납의 이해 및 적용<br>-정리수납의 중요성 |                |
| 이론2             | 공간정리수납의 이해 및 적용<br>-생활 속 공간정리수납                             | 4시간<br>10시~12시 |
| 이론3             | 공간정리수납의 이해 및 적용<br>-공간정리, 정리, 수납 정리                         |                |
| 이론4             | 공간정리수납의 이해 및 적용<br>-공간정리, 정리, 수납 정리                         |                |
| 이론5             | 공간정리수납의 이해 및 적용<br>-생활 속 공간정리수납<br>-정리수납의 중요성               |                |
| 실습(총2회)<br>봉사활동 | 공간정리수납의 이해 및 적용<br>-생활 속 공간정리수납<br>-정리수납의 중요성               | 4시간씩<br>4시간씩   |

접수일: 2024년 3월 27일부터 신사동 주민 25명 접수  
 접수기간: 전화, 방문, 우체국 ECR카드 신청  
 문의처: 신사동 주민자치회 ☎ 02-3151-0106-7

**실행사업 3**

## 정리수납 배워서 남주자

**1**  
필요성

- 코로나19로 정리수납의 필요성 증대  
-삶의 공간정리, 마음정리 필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연계 필요

**2**  
사업내용

- 이론교육: 5회(3시간씩)
- 정리실습: 2회(2팀씩 2가구)
- 정리 봉사: 3가구(독거어르신)  
-수료식  
-민들레 봉사단 출범(17명)

**3**  
참여&효과

- 참여자: 약 30여명
-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정리봉사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및 일자리연계  
-공간정리큐레이터 자격증  
자부담 취득

feat. - 수료식 때 냥파(냥장고파먹기)로 포토락 파티를... 모두모두 요리사/2025년 2기도 함께해요~

실행사업 3\_정리수납 배워서 남 주자

### 행사사진

이랜드교육5화



실행사업 3\_정리수납 배워서 남 주자

### 행사사진

실습 2팀씩 2화



실행사업 3\_정리수납 배워서 남 주자

### 행사사진

실습 2팀씩 2화



실행사업 3\_정리수납 배워서 남 주자

봉사3기

### 행사사진



실행사업 3\_정리수납 배워서 남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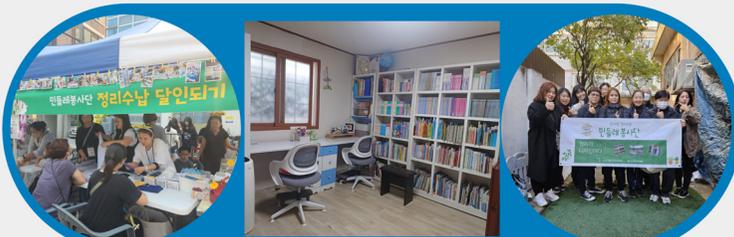
수료식 및 평가회

### 행사사진



실행사업 3\_정리수납 배워서 남 주자

### 행사사진\_민들레봉사단월약상



feat. 사업종료 후 주민총회 때 민들레봉사단이 부스운영하여 정리수납 봉사처 모집, 11월 다자녀 가정 정리수납 봉사 실천함

## 4. 반지하생활공간개선사업 예산 24,000천원\_활기찬건강복지분과

실행사업 4

### 반지하생활공간 방역사업

참여가구수 : 신사1동 관내 반지하 거주  
30여 가구 (3회씩 실시) 방역실시로  
환경개선

실행 : 활기찬건강복지분과  
예산 : 6,000천원  
재원 : 2024.은평구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 5. 제2회 봉산아래신나는 마을축제 예산 30,000천원\_배움문화생기분과

실행사업 5

### 제2회 봉산아래 신나는마을축제

실행 : 배움문화생기분과  
예산 : 30,000천원  
재원 : 2024.은평구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실행사업1

## 제2회 봉산아래 신나는 마을축제

1

### 필요성

- 신사1동에는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 지역문화교류와 주민소통의 장 마련 필요

2

### 사업내용

- 내용 : 문화공연, 장기자랑, 체험부스, 베틀장터, 푸드트럭, 왕왕왕왕(팔씨름, 딱지, 제기, 홀라후프) 선발전 등
- 장소 : 새라골어린이공원 인근
- 방법 : 9/7주민총회, 신사1동 에버랜드(에어놀이터)와 동시 실시

3

### 참여&효과

- 참여자 : 525명 이상
-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
- 장기자랑 등 주민 적극 참여
- 재봉틀배우기로 친환경 축제 소품제작 활용

feat. 2023년부터 공원인근 도로를 막고 진행하는 마을축제가 온 마을 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실행사업 5\_제2회 봉산아래 신나는 마을축제

### 행사사진

2024년 새라골어린이공원



실행사업5\_제2회봉산아래신나는 마을축제

### 행사사진



## 6. 봉산 근력운동기구 설치 예산 15,000천원\_모니터링

실행사업 6\_시설사업 모니터링

### 봉산 근력운동 기구 설치

봉산에 근력운동을 위한 기구 설치로 건강  
한 읍 만들기에 이바지

실행 : 구청 공원녹지과  
예산 : 15,000천원  
재원 : 2024.은평구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 7.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 7,000천원\_모니터링

실행사업 7\_시설사업 모니터링

### 현수막 게시대 설치

주민센터 앞마당 화단에 2단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여 소통 및 홍보 증대

실행 : 신사1동 주민센터  
예산 : 7,000천원  
재원 : 2024.은평구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 주택관리를 위한 생활 집수리학교 예산 8,450천원\_활기찬건강복지분과

**실행사업 8**

### 주택관리를 위한 집수리학교

일시: 2024.7.2-7.23 (목요일) 14시-17시(2주5회, 총42회)  
장소: 신사동 주민센터 4층 강당 외

| 회차 | 주제     | 강사        |
|----|--------|-----------|
| 1  | 개회식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4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5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6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7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8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9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0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1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2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3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4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5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6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7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8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19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0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1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2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3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4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5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6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7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8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29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0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1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2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3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4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5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6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7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8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39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40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41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 42 | 주택관리법령 | 신사동 주민자치회 |

실행: 활기찬건강복지분과  
예산: 8,450천원  
재원: 2024.서울시 주민자치특화사업

**실행사업 8**

### 주택관리를 위한 집수리학교

**1**  
필요성

신사동에는 오래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학교를 통해 주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2**  
사업내용

-교육 및 실습: 5회(3시간씩)  
-집수리행사: 총 20회  
1인칭남자구 도배 및 LED전등교체/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LED  
전등 교체

**3**  
참여&효과

참여자: 25여명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  
-참여자 및 봉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feat. 남성의 참여를 위해 평일 오후로 강의 시간 책



2024. 은평1동-1대학 교육사업

# 날아올라 신사1동 합창단

## 예산 11,000천원\_신사1동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9

### 날아올라 신사1동합창단

실행 :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 : 11,000천원  
재원 : 은평 1동-1대학 교육사업

실행사업 9

### 날아올라 신사1동 합창단

|  |   |  |
|--|---|--|
| <p><b>1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래식 합창단을 만들어 지역주민 화합 도모</li> <li>-공연을 통한 문화활동가능</li> </ul> | <p><b>2 사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창교육 : 23회(10여국)</li> <li>-공연 : 2회(주민총회, 창단기념연주회)</li> <li>-신사1동날아올라합창단 창단기념연주회 개최(11/16)</li> <li>-평가회</li> </ul> | <p><b>3 참여&amp;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 : 25명</li> <li>-서울기독대학교 음악학과 연계하여 참여자 만족도 높음</li> <li>-2024.주민자치회 합동 성과공유회 공연 계획(12/13)</li> </ul> |
|--|---|--|

feat. 은평1동-1대학은 16개동이 동별 23년에 업약, 1동1대학 교육사업 성과공유회 24년 11월 개최

실행사업 9\_날아올라 신사1동합창단

### 행사사진

실행사업 8-주택관리위원회 집수리학교

### 행사사진

실행사업 9\_날아올라 신사1동합창단

### 행사사진

실행사업 9\_날아올라 신사1동합창단

### 행사사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                |                                 |
|-------|----------------|---------------------------------|
| 제 정   | 의견수렴 및 논의      | 2021.1.19. 운영세칙수립 워크숍           |
|       | 운영 세칙 초안 정리 1  | 2021.2.17. 운영세칙준비위원회            |
|       | 운영 세칙 초안 정리 2  | 2021.2.24. 운영세칙준비위원회            |
|       |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 2021.3.18. 정기회의                 |
| 1차 개정 | 운영세칙 개정 초안     | 2022.3.17. 운영세칙개정위원회            |
|       | 운영세칙 개정 수정안    | 2022.3.21. 운영세칙개정위원회            |
|       |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 2022.3.23.~3.28 밴드 및 SNS        |
|       |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 2022.3.31. 정기회의                 |
| 2차 개정 | 운영세칙 개정 초안 정리  | 2022.7.21.~8.31.(총7회) 운영세칙개정위원회 |
|       | 운영세칙 개정 수정안    | 2022.9.14. 운영세칙개정위원회            |
|       | 운영세칙 개정 수정 2차안 | 2022.9.21. 운영진회의                |
|       |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 9.22.~9.27. 밴드 및 SNS            |
|       |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 2022.9.29. 정기회의                 |
| 3차 개정 | 운영세칙 개정 수정안    | 2022.10.19. 운영진회의               |
|       |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 10.25.~10.26. 밴드 및 SNS          |
|       |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 2022.10.27. 정기회의                |
| 4차 개정 | 운영세칙개정 초안정리    | 2023.6.28. 운영세칙개정위원회            |
|       |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 2023.6.30.~7.11.SNS및운영진회의       |
|       |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 2023.7.18. 정기회의                 |
| 5차 개정 | 운영세칙개정 초안정리    | 2024.4.11. 운영세칙개정위원회            |
|       |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 2024.4.13.~4.15. SNS            |
|       |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 2024.4.16. 정기회의                 |

2024. 04. 16.



신사1동 주민자치회

# 신사1동 주민자치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               |
|----|---------------|
| 제정 | 2021. 3. 18.  |
| 개정 | 2022. 3. 31.  |
| 개정 | 2022. 9. 29.  |
| 개정 | 2022. 10. 27. |
| 개정 | 2023. 7. 18.  |
| 개정 | 2024. 4. 16.  |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신사1동 지역사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에 따라 신사1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신사1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신사1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 및 분과위원장, 분과총무, 사무국장, 간사를 말한다.
7. “분과원”이란 신사1동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자치회(장)에게 분과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과활동을 한 주민을 말한다.
8. “분과위원”이란 제2호의 자치위원과 제7호의 분과원을 말한다.
9.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사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신사1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이용 목적 배제
7. 지역사회 봉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본조개정 2024.4.16.)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조개정 2023.07.18.)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회가 수행하는 기능
4.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5.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 위탁·수탁 처리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제2장 주민자치회

###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조직이다.

### 제9조(위원)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자격은 조례 및 「신사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한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한다.
- ④ 자치위원은 직능단체(동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지도협의회, 주민자치회) 3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위원의 의무)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연간 4회 또는 분과회의 연간 4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주민자치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촉을 결의하고,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개정 2024.4.16.)

### 제11조(사임 및 해임)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 당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사임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임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24.4.16.)
- ③ 운영진이 사임 시에는 사임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자치회장은 운영진 3분의 1 이상 발의하여 운영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 ① 주민자치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운영진을 둔다.
- ②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자치부회장 1명
  3. 감사 2명 (회계감사, 사업감사 각 1명)
  4. 분과별 분과위원장 1명
  5. 분과별 분과총무 1명
  6. 사무국장 1명
  7. 간사 1명

### 제13조(운영진 선출)

-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두며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되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차수 득표자로 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무기명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 득표 시 선출한다.
- ② 간사는 운영진에서 협의하여 자치회장이 자치위원 또는 은평구 주민 중 1명을 선임 또는 호선하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07.18.)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총무는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 또는 호선한다.

### 제14조(임원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출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투표방식 등의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4.16.)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5조(운영진 임무) (본조개정 2024.4.16.)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반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수시 감사 시에는 감사 시작 30일 전에 자치회장에게 감사 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며, 분과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총무가 분과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총무는 분과회의 결정사항과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⑦ 사무국장과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록으로 보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전반을 수행한다.

#### 제16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분과위원장 중 호선하여 남은 임기동안 자치부회장직을 수행한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치위원과 분과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치위원 수는 최소 5명 이상으로 하고, 자치회관 운영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며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총무를 호선 또는 선임한다.

④ 각 분과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2. 행정사무 위·수탁 발굴

3. 마을 공동사업 수행

####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조개정 2023.07.18.)(본조개정 2024.4.16.)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사무국장)** (본조개정 2024.4.16.)

-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동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단, 동에서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신사1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 선정 방법과 절차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 ⑤ 사무국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1. 자치회장 1명
  2. 자치위원 중 자치회장 추천자 2명
  3. 동장 또는 복지행정팀장 1명
  4. 동장 추천자(외부인사) 1명
- ⑥ 구에서 공개모집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20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임시회의
  4. 운영진회의
  5. 민관협력회의
  6. 분과회의
- ②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제1항의 1호부터 5호까지 회의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6호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③ 주민자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나, 참관인의 발언권은 제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07.18.)

### 제21조(주민총회) (본조개정 2024.4.16.)

- ① 주민총회(온라인 주민총회 포함)는 주민자치회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7세 이상의 주민(신사1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온라인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⑧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⑨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 제22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① 주민총회(온라인 주민총회 포함)는 주민자치회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7세 이상의 주민(신사1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온라인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⑧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⑨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 제23조(운영진회의)

-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주민자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세칙 제12조에 따른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토의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 ④ 감사와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의 내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본조개정 2024.4.16.)

### 제24조(분과회의)

-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 다만, 필요 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매월 정기회의 이전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여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분과원은 분과회의에서 의결권과 발언권이 있다.
  - ⑤ 분과 활동은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07.18.)

### 제25조(민관협력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 제26조(주민공론장 및 성과공유회) (본조개정 2024.4.16.)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연말에 당해 연도의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및 평가, 다음 연도 사업안내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 제27조(회의 의결)

- ① 모든 회의에서 위원은 의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의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세칙 변경(제정·개정·폐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2.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3. 법령위반 사항 및 의결 실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재의결
- ④ 대면회의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 등을 통한 비대면 의사표시로 의결하거나 대면과 비대면의 방법을 병행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28조(자치계획 수립)

- ① 운영진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②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③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④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4장 자치회관의 운영

### 제29조(자치회관 운영 원칙)

-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 제5장 재정 및 예산 관리

### 제3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 ① 주민자치회에서 작성 및 수·발신 공문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4.16.)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주민자치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8. 위원 위·해촉 대장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31조(직인)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사무국장과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인수인계)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진의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 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상세히 기록·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 위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 시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사무인계)를 준용하되,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 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제33조(사업비 집행 · 공개)

- ①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34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자치위원 등이 후원한 예산

### 제35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과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37조(감사수감)

-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특별회비)

- ① 주민자치회 회비는 월납 10,000원, 연납 100,000원(1분기 내 납부 시)으로 한다.
- ② 신규로 자치위원에 선출된 경우 선임될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비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는 운영경비, 행사 등에 사용
  2. 회비 사용 내역은 정기회의 때 공개
  3. 회비 사용 후 잔금이 있을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가능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7.18.)

## 부 칙 (2022. 3. 31.)

###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운영진에서 결정하고 정기회의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른다. 단, 조례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 부 칙 (2022. 9. 29.)

###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서 제9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에서제4항,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 제11조제1항, 제3항, 제12조 명칭, 제12조제3항제3호에서7호,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3항에서 제6항,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5호, 제6호,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명칭, 제22조제1항 및 제3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제2호, 제4항, 제28조, 제4장, 제5장,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4조제1항 및 제5호의 개정조문, 제2조제5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제3장 명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32조, 제35조제4항의 신설조문,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 본문, 제27조제3항2호의 조항삭제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2. 10. 27.)

###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제1호, 제34조제1항 및 제5호, 제35조제4항의 개정조문, 제10조제4항의 조항삭제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3. 7. 18.)

###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특별회비)

자치위원의 2023년도 회비는 월납 10,000원, 일시납 60,000원이고, 납부방법은 각자가 선택한다.

### 제3조(신설·개정)

본 운영세칙의 신설·개정사항은 붙임 신규조문 대비표로 같음한다. (본조신설 2023.7.18.)

## 부 칙 (2024. 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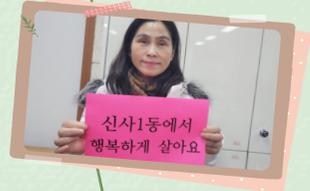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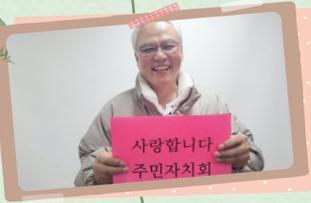
###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2024.4.16.)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설·개정)

본 운영세칙의 신설·개정사항은 붙임 신규조문 대비표로 같음한다. (본조신설 2024.4.16.)

# 2024년 2기를 마무리하며



# 2024 신사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

|        |  |
|--------|--|
| 발행일    | 2024.12.   |
| 발행처    | 신사1동 주민자치회(02-3151-0106)<br>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
| 디자인·제작 | 참디자인   |

---



신사1동 주민자치회